

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
출연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원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8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구미지역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심화, 대기업 해외 생산기지 이전,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 대내외 리스크 상존

나. 구미지역 기업부설연구소는 '08년 179개에서 '18년 417개로 급증*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며 기술개발 투자 확대

<표 1> 구미지역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추이

(단위 : 개사)

연도	'08	'09	'10	'11	'12	'13	'14	'15	'16	'17	'18
연구소	179	187	215	240	270	305	350	394	408	419	417
전담부서	47	57	63	72	86	105	149	192	215	211	200

출처 :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koita)

다. 중소기업 업종전환 및 신규사업 발굴 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해, 지역 내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주도형 R&D추진 필요

라. 이에 따라,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업종 다각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자생적 기술 혁신 역량강화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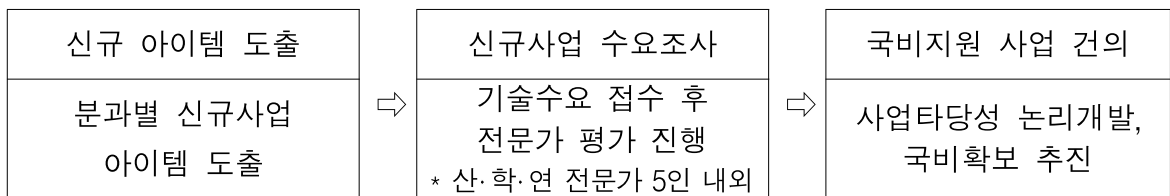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(1) 출연 예정액 : 120,000천원
- (2) 주관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(3) 사업연도 : 2019년
- (4) 사업대상 : 구미시 관내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

나. 주요 사업

- (1) 신사업 발굴·기획 : 정부 R&D과제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
산·학·연·관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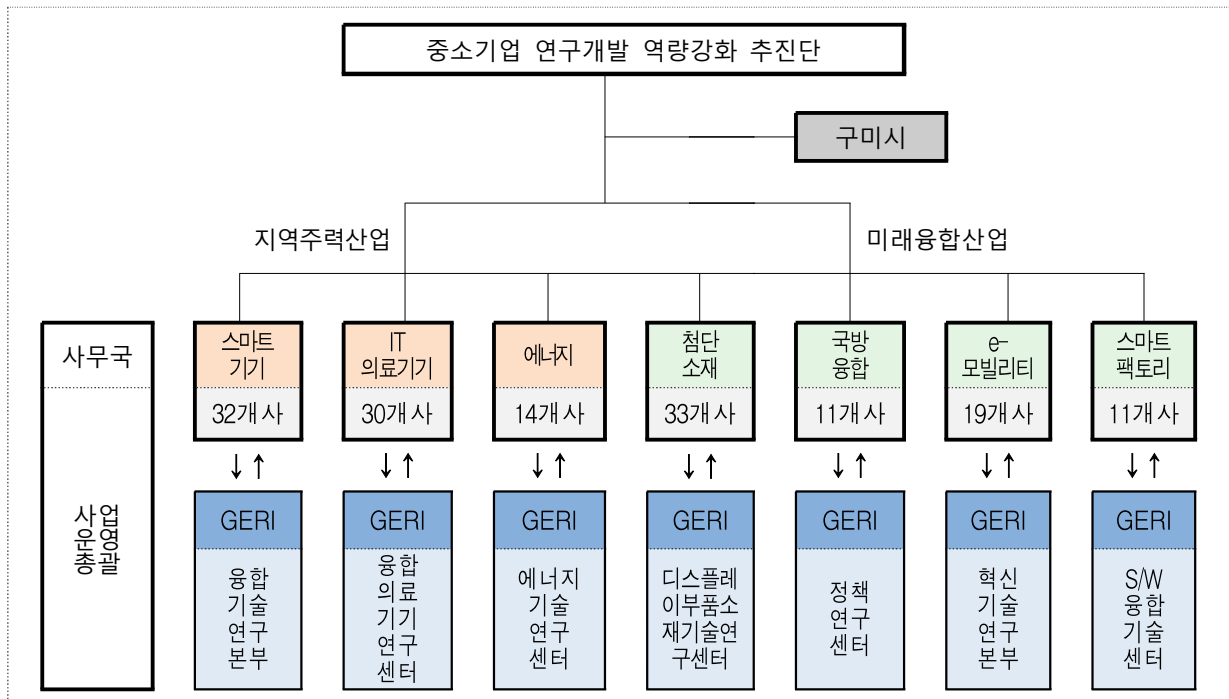


- (2) 기술교류협력 활성화 : 지역 중소기업간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 활성화, 최신 산업·기술 정보 제공
- (3) 협력형 R&D-사업화 촉진 :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협력지원체계 구축

구 분	지원내용
수요 맞춤형 국가R&D 과제기획	· 국가R&D사업 정보제공 : 산업부, 미래부, 중기청 등 맞춤형 R&D사업 정보 · 국가R&D과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: 기술·시장 정보 분석, 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 등
우수기술연구센터 발굴·육성	· 사업 계획서 작성지원 : 사업 참여 기술 및 아이템 구체화와 전략, 기술개발의 필요성·현황·목표, 추진체계, 사업화 계획 등
융합커뮤니티 신사업발굴	· 신기술·아이템 발굴, 신규 프로젝트 기획, 기획 사업화 추진

다. 운영체제

- (1) (구미시)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정책결정 및 사업총괄
- (2) (사무국) 운영 총괄 실무 *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 정책연구센터
- (3) (분과위원회) 연구개발, 신사업 발굴 검토 및 기술교류협력



라. 출연의 필요성

- (1) 국내 ICT의 생산거점이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*로 지역경제 위기감 고조

* 광업·제조업 비중 77.2%로 전국(30.3%)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, 대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확대, 수도권 이전 등으로 지역 제조업 침체

- (2) 구미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(창립 '16.07.21)를 중심으로, 중소기업의 수직적·수평적 경제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일괄지원체계 구축과 공동 R&D 과제기획을 통해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선제적인 대응 필요

- (3) 지역의 산학연관 주체간 연계협력을 위한 지식허브 기능과
‘구미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’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
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출연을 통해 중소기업 연구개발
역량강화사업 지원

마. 추진 실적

(1) 운영현황

- 구미 기업부설연구소장 중심 협의회 구성·운영
 - * 7개 분과 108개사, 150명(‘18.08.30 기준)
 - * 스마트기기 32명, IT의료기기 30명, 에너지부품소재 14명, 첨단소재 33명, 국방융합 11명, e-모빌리티 19명, 스마트팩토리 11명(중복포함)
- ▶ 각 분과별 연구간사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연구본부에서 참여

(2) 주요 성과

- 기업주도 신산업·신사업 R&D과제 발굴·수주
 - * 과기부 ICT R&D바우처사업 선정(3개사, 총 13억원 국비확보, ‘17~’18)
 - * 지역SW융합제품상용화지원사업 선정(포인드(주), 국비 7억 확보, ‘18.04)
- 중-중기간 협업기반의 융합커뮤니티과제 발굴·기획(3건)
 - * 공기질 측정개선 기술개발, 양압기 개발, 스마트팩토리 안전·보안 로드맵 구축(국책과제 연계 추진中)
- 구미지역 기업연구소의 유지 운영 및 양적확대
 - * 6개 분과 87개사 123명(‘16) → 7개 분과 108개사, 150명(‘18)
- 지역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산·학·연·관 교류 활성화
 - * 협의회 총회(3회), 임원단회의(13회), 분과별 기술교류회(30회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제20조(재정 지원) 제1항, 제4조 제1항
- (2)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」 제4조(책무) 제1항, 제3항
제5조(과학기술 진흥사업 등) 제1항
- (3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
제3조 (재원의 조달) 제1항, 제2항, 제4조 (사업)

나. 예산조치 : 2019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※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

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

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

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

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

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장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
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
인정되는 사업

□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」

제4조(책무) 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시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 진흥시책 및 그 인력·인재 육성, 정보네트워크 구축, 기반 강화 등에 대한 시책과 동시에 독창적 및 공동 연구개발, 신기술의 보급·지원 등 해당 혁신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 소재 기업·대학·연구기관 등이 지식기반 경제 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혁신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 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.

제5조(과학기술 진흥사업 등) ① 시장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, 정부출연기관, 공공기관, 학계, 연구기관, 산업체, 과학기술인 단체 등(이하 “관련기관 등”이라 한다)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학기술진흥사업(이하 “진흥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연구기반 및 과학문화시설 확충

2. 다음 각 목의 산업 육성

가. 첨단·지식기반·뷰티·탄소 및 물산업

나. 부품·소재산업

다. 신성장동력산업

3. 중소기업 신기술·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이 동시에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관련사업(이하 “관련사업”이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인력 육성사업

2. 문화 확산사업 3. 혁신역량 등 강화·활성화사업

□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재원의 조달)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.

1.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

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

3. 대학, 연구소,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

4.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

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·보조할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기술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연구개발사업
2. 기술교육훈련사업
3. 인력양성사업
4. 창업보육 및 성장보육지원사업
5. 정보교류사업
6. 기술혁신지원사업
7. 시험생산사업
8. 시설·장비 운용사업
9. 전자·정보통신기기 등 부품소재육성사업
10. 정부·지방자치단체·기업 등의 위탁사업과 용역사업
11. 그 밖에 기술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소관 실 · 과		투자통상과
입 안 자	과 장	최 동 문
	담 당	조 영 열
	담 당 자	박 상 진 (480-6102)